

##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### 심 사 보 고

#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'97. 4. 10

다. 상 정 일 자 : '97. 4. 17 (제54회 임시회 제1차 산업·건설위원회)

#### 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온천사업소장 최 성 기

나. 제정이유

- 법률 제5121호로 온천법이 '95. 12. 30 전문개정 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이 '96. 7. 1 전문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이며

다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 제2조 온천법 제5조 제1항을 온천법 제8조로 동 조례 제5조의 법 제11조를 법 제13조로 동 조례 제11조의 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를 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로 동 조례 제12조의 동법 시행령 제15조를 온천법 제16조로 개정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.

#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임근성)

-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온천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동 조례를 보완키위한 사항으로 절차상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#### 4. 질의답변요지

" 생 략 "

5. 토론요지  
" 생략 "

6. 심사결과  
" 원안가결 "

첨 부 : 화순군온천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 끝.

##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97 - 48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일자 : 1997. 4. 10

제 출 자 : 화 순 군 수

### 1. 제안이유

- 온천법 개정으로 인하여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의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- "온천법 제5조제1항"을 "온천법 제8조"로 개정(안 제2조)
- "법 제11조"를 "법 제13조"로 개정(안 제5조)
- "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"를 "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"로 개정(안 제11조)
- "동법시행령 제15조"를 "온천법 제16조"로 개정(안 제12조)

##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중 "온천법 제5조제1항"을 "온천법 제8조"로 한다.

제5조중 "법 제11조"를 "법 제13조"로 한다.

제11조중 "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"를 "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"로 한다.

제12조중 "동법시행령 제15조"를 "온천법 제16조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① 채수장치라 함은 <u>온천법 제5조제1항</u>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굴착한 온천공 및 온천수를 채수하기 위한 동력장치 일체와 급수조까지의 부대 시설을 말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2조 (용어의 정의) - - - - - - - - - - .</p> <p>① - - - - - 온천법 제8조 - 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 (급수대상) 온천수의 급수대상은 <u>법 제11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수의 이용허가를 받자로 한다.</p>	<p>제5조 (급수대상) - - - - - <u>법 제13조</u> - - - - - - - - - - .</p>
<p>제11조 (공급계약) 군수는 <u>법 제11조 제1항</u> 및 <u>동법시행령 제8조</u>의 규정에 의거 온천수의 이용허가를 받고 온천수 공급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.</p> <p>① ~ ⑤ (생략)</p>	<p>제11조 (공급계약) - - - 법 제13조 및 <u>동법시행령 제10조</u> - .</p> <p>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 (사용료) ① 온천수를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<u>동법시행령 제15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정하며 고시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2조 (사용료) ① - - - - - - - - - - 동법 제16조의 - - - - - - - - - - - - - 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